

2020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

2020.01.16.
산업안전보건
개정법 시행

법 조항	주요 내용	벌칙
제17조(안전관리자) 제18조(보건관리자)	○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은 유자격자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로 선임 하여야 한다.(자체 선임하거나 대행기관 위탁 가능)	500만원 이하 과태료
제29조 (안전보건교육)	○ 정기교육 · 사무직근로자 : 매분기 3시간 이상 · 사무직 외 근로자 : 매분기 6시간 이상 · 관리감독자 : 연간 16시간 이상 ○ 신규채용 시 교육 · 일용근로자 : 1시간 이상 ·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: 8시간 이상 ○ 특별교육 · 일용근로자 : 2시간 이상 ·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: 16시간 이상	500만원이하의 과태료 (횟수·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)
제32조 (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)	○사업주(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)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	500만원 이하 과태료
제34조 (법령요지 등의 게시)	○ 본 법령요지를 게시 하여 근로자들이 알게 하여야 함	500만원 이하 과태료
제36조 (위험성평가)	○건설물, 기계·기구, 설비,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,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, 그 결과에 조치를 하여야하며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 시켜야 한다. ○위험성 평가의 경우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평가 실시 하여야 함 ※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(고용노동부 시 제2017-36)	500만원이하의 과태료 (관리감독자 직무 미이행)
제37조 (안전·보건표지의 부착 등)	○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, 비상 시 조치 안내 등의 안전·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함 ※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참조	500만원이하의 과태료
제38조 (안전조치)	○기계·기구, 기타설비, 폭발성·발화성·인화성물질, 전기·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※ 세부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 되어 있음	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제39조 (보건조치)	○원재료·가스·증기·분진·흙·미스트·산소결핍·병원체·방사선·유해광선·고온·저온·초음파·소음·진동·이상 기압, 기계·액체·잔재물, 계측감시, 컴퓨터 단말기 조작, 정밀공작 단순반복·인체에 과도한 부담 작업, 환기·채광·조명·보온·방습·청결 등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※ 세부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 되어 있음	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제41조 (고객의폭언등으로 인한건강장애 예방조치)	○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(이하 "고객응대근로자"라 한다)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, 폭행,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(이하 "폭언등"이라 한다)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. [시행 2018.10.18.]	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
제54조 (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)	○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.	1년이하의징역 1천만원이하의 징역
57조 (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)	○ 3일 이상의 휴업 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자가 발생한 때에 1개월 이내 에 산업재해조사표 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 중대재해의 경우 지체 없이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서 전화·팩스,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	일반재해 1,500만원 이하 과태료 중대재해 3,000만원 이하 과태료
제63조 (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)	○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.	3년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제80조 (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등의 방호조치 등)	○유해위험기계 기구에는 법에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한 후 사용하여야 함 -예초기(날접촉 예방장치), 원심기(회전체 접촉 예방장치), 공기압축기(압력방출 장치), 금속절단기(날접촉 예방장치), 지게차(헤드가드, 백레스트, 전조등, 후미등, 안전벨트), 포장기계(진공포장기, 랩핑기로 한정) (구동부 방호 연동장치)	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제84조 (안전인증)	○프레스·전단기 및 절곡기·크레인·리프트·압력용기·롤러기·사출성형기·고소작업대, 곤돌라, 기계톱(이동식) 등은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·기구로서 제조사 는 안전인증 을 받아야 함 (사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 받은 제품 만을 사용토록 해야함)	3년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제93조 (안전검사)	○프레스·전단기·크레인(2톤 이상)·리프트·압력용기·곤돌라·국소배기장치(이동식제외)·원심기(산업용)·롤러기·사출성형기(형체결력294KN이상)·고소작업대(차량탑재형)·컨베이어·산업용 로봇 은 2년마다 안전검사 를 받아야 함	1천만원이하의 과태료
제111조(자료제공) 제114조 (게시및 교육) 제115조 (경고표지부착)	○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제공받는자에게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제공 하여야 함.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및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함. ○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용기, 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하여야 함.	500만원이하의 과태료 300만원이하의 과태료
제125조 (작업환경측정)	○화학적인자[유기화합물(113종),금속류(23종),산및알칼리류(17종),가스상태물질류(15종),허가대상유해물질(12종),분진(7종),금속가공유(1종),물리적인자(2종)]8시간시간가중평균80dB 이상소음,고열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실시 - 6월에 1회이상,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년 1회	1천만원이하의 과태료
제129조 제130조 (일반·특수건강진단)	○ 일반건강진단 : · 사무직은 2년에 1회 ·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○ 특수건강진단 :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○ 배치전건강진단 : 신규채용 또는 작업전환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	1천만원이하의 과태료

* 기타 법 세부사항은 법제처에서 '산업안전보건법'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